

대고객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이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p>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4.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은 국제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국제신용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p>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p> <p>② 조건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표준약관 반영

신용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증권		
제9조(매매거래의 통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5. <신설>	제9조(매매거래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표준약관 반영
제10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매수한 통화 이회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의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로 환산한 매수 통화 기준 시장 가액을 사용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10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고객이 매수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의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로 환산한 매수 통화 기준 시장 가액을 사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오타 수정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생략>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20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표준약관 반영

<p>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p>
<p><신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꼬리말 문구 추가</p>